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2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3년 단위로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산정하는 것이 잦은 주차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 미세먼지 시준제와 함께 조례 시행일을 맞추어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시지가 산정 기간 “3년”을 “5년”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별표1)
- 개정된 조례 시행을 “2020년 10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부칙)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동 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시장 발의안)	수정안(전문위원실안)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p> <p>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지역-----</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p>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
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
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
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
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
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
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
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
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급지 요금 -----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
음)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개정안과 같
음)

③ (개정안과 같음)

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강남·서초지역 :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

라. (현행 바목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
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
한 곳으로 시장이 지
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
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
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생략)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
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
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
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생략)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
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
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
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4 .

-----80%-----
----- . (이하 생략)

5. (현행과 같음)

6 .

-----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
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
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 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생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에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현행 제9호와 같음 같음)

9. -----

-----1,2,3
급지 -----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
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

<비 고>

<신 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 고>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
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
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
로·율곡로·종로·난
계로·퇴계로·통일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
· 이화여대길·대흥로
· 구 용산선철도·양화
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
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
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
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
대로·올림픽대로·분
당수서로·남부순환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
석촌호수로·삼학사로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개정안과 같음)

가. ~ 차. (개정안과 같
음)

· 잠실로 · 올림픽로 · 송파대로 · 신천로 · 오금로 · 올림픽로 · 위례성대로 ·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 · 상암로 · 양재대로 ·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 · 전농로 · 서울시립대로 · 천호대로 ·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 · 마포지역: 강변북로 · 마포대로 · 충정로 · 통일로 ·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도봉로 · 오현로 · 오패산로 · 정릉로 · 삼양로 · 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 · 목동서로 · 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12. (생략)

2.~13. (중전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2.~13.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020년 12월 1일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를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를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금지”를 “해당 금지 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아.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자. 미아지역: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 급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생략)</p> <p>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1」의 <u>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3급지 월 정기권의 야간요금을 적용한다.</u></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p> <p>1. <u>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u></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 ----- ----- ----- ----- -----</p> <p>1. <u>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② (생략)</p>	<p>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2. (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

개정안

③ -----

--. ----- 해당 급지 요금 -----

-.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현행	개정안
<p>는 대지</p> <p>(2) <u>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3) <u>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4) <u>강남·서초지역 :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5) <u>잠실지역 :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6) <u>천호지역 :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7) <u>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8) <u>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9) <u>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10) <u>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p>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p>	<p>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p> <p>(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p> <p>(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p> <p>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p>(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p> <p>(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p> <p>(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p> <p>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현행	개정안
<p><u>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u></p> <p>마. 5급지</p> <p>(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p> <p>(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바. (생략)</p> <p>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5. (생략)</p> <p>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p>	<p>개정안</p> <p>라. (현행 바목과 같음)</p> <p>4. ----- ----- ----- -----80%----- ----- . (이하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 ----- ----- -----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7. <삭 제></p> <p>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에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p>

현행	개정안
<p>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p>	<p>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p>
<p>9. (생략)</p>	<p>8. (현행 제9호와 같음 같음)</p>
<p>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9. ----- ----- -----1,2,3급지----- ----- ----- ----- -----</p>
<p>[별표 3]</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p>
<p><비고></p>	<p><비고></p>
<p><신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p> <p>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p>

현 행	개 정 안
<p>1.~12. (생략)</p>	<p>· 오금로· 올림픽로· 위례성대로·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바. 천호지역: 올림픽로· 상암로· 양재대로·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사. 청량리지역: 제기로· 전농로· 서울시립대로· 천호대로·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아. 용산· 마포지역: 강변북로· 마포대로· 충정로· 통일로·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자. 미아지역: 도봉로· 오현로· 오패산로· 정릉로· 삼양로· 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차. 목동지역: 목동동로· 목동서로· 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2.~13. (중전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